

#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조합원 취소분)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9.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9.13.(금)	2024.09.23.(월)	2024.09.24.(화)	2024.09.30.(월)	2024.10.07.(월)~ 2024.10.09.(수)	2024.10.14.(월)~ 2024.10.16.(수)

I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내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력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 - 40294호(2024. 09. 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6-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7층 4개동 총 870세대 중 조합원 취소물량 8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4000520	01	069.9393	69	69.9393	28.4897	98.4290	48.7658	147.1948	20.4246	3	3
	02	084.9189A	84A	84.9189	33.7207	118.6396	59.2103	177.8499	24.7991	3	3
	03	084.6128B	84B	84.6128	34.3389	118.9517	58.9970	177.9487	24.7098	2	2
<b>합 계</b>										<b>8</b>	<b>8</b>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대지지분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 확정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 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타입 (약식표기)	동·라인	층	호실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4-12-21	2025-05-21	2025-10-21	2026-05-21	2026-10-21	2027-03-21	
69	102동 1호	18층	1801호	1	170,596,967	547,703,033	718,300,000	10,000,000	61,830,000	71,830,000	71,830,000	71,830,000	71,830,000	71,830,000	71,830,000	215,490,000
	102동 2호	34층	3402호	1	170,596,967	569,403,033	740,000,000	10,000,000	6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222,000,000
	103동 2호	38층	3802호	1	170,596,967	569,403,033	740,000,000	10,000,000	6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222,000,000
84A	102동 5호	35층	3505호	1	206,735,893	702,364,107	909,100,000	10,000,000	8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272,730,000
	104동 5호	30층	3005호	1	206,735,893	702,364,107	909,100,000	10,000,000	8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272,730,000
		36층	3605호	1	206,735,893	702,364,107	909,100,000	10,000,000	8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90,910,000	272,730,000
84B	102동 4호	24층	2404호	1	207,170,679	671,429,321	878,600,000	10,000,000	7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263,580,000
	104동 2호	31층	3102호	1	207,170,679	688,929,321	896,100,000	10,000,000	79,610,000	89,610,000	89,610,000	89,610,000	89,610,000	89,610,000	89,610,000	268,83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인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고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제한)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이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주택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제한 등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주체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table border="1" data-bbox="280 595 2033 760">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 <b>청약통장 가입기간</b>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이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280 1144 2067 1215">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body>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280 1277 2085 1458">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3">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ul>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b>■ ②무주택자 우선공급</b>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b>■ 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b>■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IV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4.09.23.(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4.09.24.(화)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란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b>공고단지 청약연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b>당첨자발표 서비스</b>	<b>청약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4.09.30.(월) ~ 2024.10.09(수)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b>문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4.09.3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당첨자 발표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4.09.30.(월)</li> <li>확인방법</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V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건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ol>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임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공동서류 및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li> <li>-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ul>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li> </ul>
일반공급 당첨자 (가정제)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li> <li>※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b>&lt;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gt;</b></li> <li>*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li>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li> <li>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p>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p> <p>*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p>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p>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p> <p>*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p>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li> <li>※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li> </ul>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li> <li>-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li> <li>•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li> <li>•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li> </ul>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1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체결일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4.10.14.(월) ~ 2024.10.16.(수), [10:00 ~ 16:00]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4-9, 3층)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 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 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전자 수입인지를 본 계약시 지참해야 합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세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또는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며, 공급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사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부적격 문제가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 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홈페이지 게시 서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계약금입금증	○		-	• 현장 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이체
제3자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위임장		○	-	• 당사 소정양식(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공고일 이후에 청약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당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포함)시 LTV가 60%이나,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0%)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되는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 보증은 비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중도금 대출 협약에 따라 중도금 1~6차(60%)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에 대하여 해당대출의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를 포함)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함.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중도금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부동산 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	351-1283-4194-63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2동 1502호 계약자 → ‘102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702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조치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6개월까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9	16,900,000	1,690,000	15,210,000	
84A	18,000,000	1,800,000	16,200,000	
84B	16,400,000	1,640,000	14,760,000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므로, 확장 분양가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후 별도 안내예정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강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설치 개소	설치 위치	금 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9	2	거실 + 안방	3,800,000	380,000	3,420,000	LG전자
	4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6,200,000	620,000	5,580,000	
84A	2	거실 + 안방	4,000,000	400,000	3,600,000	
	4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6,400,000	640,000	5,760,000	
84B	2	거실 + 안방	4,000,000	400,000	3,600,000	
	4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6,400,000	640,000	5,760,000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미 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 거실에만 시공됩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세대의 냉매배관 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가전기기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품목	해당타입	금 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식기 세척기(12인용)	전 타입	900,000	90,000	810,000	(삼성) DW60T7065SS
하이브리드 쿡탑(2IH+1HL)	전 타입	550,000	55,000	495,000	(쿠쿠) CIHR-D302FB
비스포크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수납특화장	전 타입	6,000,000	600,000	5,400,000	(삼성) 냉장고 RF60B91R2AP 김치냉장고 RQ33A74E1AP
비스포크 의류관리기(3벌용)	전 타입	1,500,000	150,000	1,350,000	(삼성) DF18CG3100TR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 ※ 주방가전 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옵션(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3도어 김치냉장고, 수납특화장)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시공품목	해당타입	금 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전타입	2,600,000	260,000	2,340,000	- 3연동 슬라이딩
거실	벽 스타일업	69	2,100,000	210,000	1,890,000	- 거실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 타일
		84A	2,000,000	200,000	1,800,000	- 거실, 복도, 주방벽 시트판넬
		84B	2,300,000	230,000	2,070,000	- 소파 뒷벽, 복도 픽처레일
	바닥 스타일업	69	2,600,000	260,000	2,340,000	- 거실, 거실복도, 주방 유럽산 바닥타일
		84A	3,100,000	310,000	2,790,000	
		84B	3,100,000	310,000	2,790,000	
	조명 스타일업	69	4,200,000	420,000	3,780,000	- 거실 우물천장 간접등 - 주방 우물천장 간접등 (69만 해당)
		84A	4,650,000	465,000	4,185,000	- 거실, 침실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84B	4,400,000	440,000	3,960,000	- 주방, 거실복도 고급 매입등 - 거실, 침실 커튼박스 간접등(안방 미포함)
주방	주방 스타일업	69	1,700,000	170,000	1,530,000	-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캐슬 미드웨이 선반
		84A	1,800,000	180,000	1,620,000	
		84B	1,800,000	180,000	1,620,000	
	주방 장식장	84A	1,900,000	190,000	1,710,000	
욕실	스타일업1	전타입	1,500,000	150,000	1,350,000	- 유럽산 욕실 벽타일, 욕실선반 하부 벽, 욕조 에이프런(욕실1) 엔지니어드 스톤
	스타일업2	전타입	4,000,000	400,000	3,600,000	- 비데일체형 고급양변기, 세면기 일체형 하부장
	스타일업3	전타입	5,000,000	500,000	4,500,000	- 욕실스타일업1+욕실스타일업2 통합
팬트리	시스템 선반	69	700,000	70,000	630,000	
		84A	700,000	70,000	630,000	
		84B	900,000	90,000	810,000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84A	1,000,000	100,000	900,000	
		84B	500,000	50,000	450,000	
	불박이장	69	1,800,000	180,000	1,620,000	
	화장대	전타입	1,200,000	120,000	1,080,000	- 스탠딩형
안방	불박이장	84A, 84B	3,500,000	350,000	3,150,000	- 슬라이딩형
침실1	불박이장	69	1,100,000	110,000	990,000	- 파우더형
		84A, 84B	1,300,000	130,000	1,170,000	
침실2	불박이장	전 타입	1,000,000	100,000	900,000	- 수납형
침실2 오픈 스튜디오		69	5,100,000	510,000	4,590,000	- 해당 옵션 선택 시 침실2 불박이장 옵션 선택 불가

- ※ 상기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불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69타입의 추가 선택품목 침실2 불박이장(수납형)과 오픈스튜디오는 중복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픈스튜디오 선택시 실 스위치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 주방 장식장 옵션 선택 시 팬트리 수납공간이 축소됩니다.
- ※ 안방 드레스룸 불박이장이나 드레스룸 내 의류관리기 옵션 미선택시 기본수납장이나 기본 시스템 수납공간으로 제공됩니다.
- ※ 스타일업(마감재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 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 추가선택 품목(유상 옵션) 공사대금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후 별도 안내예정			

-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공사대금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IX 설계관련 유의사항

-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설계 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분	내용
공동 도로및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북측에는 폭 7.5m도로, 서측에는 폭 30m도로, 단지 남측에는 폭 17m도로, 단지 동측에는 폭 9m도로가 계획 되어있음.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지 동측에는 최고높이 49층의 포레나동래, 북동측에는 낙민초등학교, 남측에는 최고높이 45층높이의 온천천경동리인타워, 북측에는철도구역(동해선)이 위치하고 있음.</li> <li>•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li> <li>• 당 단지의 북측에는 철도구역(동해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철도 높이: 약 12m(방음벽 포함 높이)로 철도운행에 따라 인접한 세대의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li> <li>•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당 단지 외부에 있는 완충녹지는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 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li> <li>•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주변도로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착공 및 분양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101동과 102동 사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 이후에도 공공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등의 행위가 금지됨.</li> <li>• 사업지의 대지경계 내에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전면공지가 조성되며,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로 디자인(조경계획,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패턴, 폭) 등의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외부에 지역 가스공급여건에 따라 가스정압시설이 설치(매립형)될 수도 있음.</li> <li>•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웬스설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외곽경계에 별도로 웬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li> <li>• 단지외곽경계에는 투시형 담장 혹은 밀생수종으로 대체되거나, 조경계획이나 인허가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구역경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인허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단지는 2023년 01월 최초사업승인완료(2022년 08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li> <li>•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li> <li>•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li> <li>• 조경 및 옹벽 계획 등은 주택과 옹벽으로의 이격거리를 표기하여야 함(104동- 옹벽과 최소이격거리 : 약4.0m, 옹벽최고높이 : 1.0m). 향후 분양홍보물과 상이하게 현장 시공될 수 있음.</li> <li>• 104동 전면부에 높이: 8m, 길이: 15m 규모의 방음벽이 시공될 예정으로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li> <li>• 분양 시 계획된 야간 경관조명계획은 야간 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마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li> <li>•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li> <li>• 천연자재(석재,목재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li> <li>• 본 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li> <li>•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 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li> <li>•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데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되며,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69㎡, 84A㎡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마감재는 69타입은 WHITE(화이트), 84A타입은 BEIGE(베이지)형으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해당타입을 참조하여 관람하시기 바람.</li> <li>•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마감재는 69타입은 WHITE(화이트)형으로, 84A,84B타입은 BEIGE(베이지)형으로 시공되며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 함.</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li> <li>•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세대모형,커뮤니티모형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 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li> <li>•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li> <li>•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li> <li>•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li> <li>•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li> </ul>
단지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li> <li>• 본 공사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로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탐라이트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li> <li>• 주동의 동출입구(일부 강판) 및 외부 저층부 5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li> <li>•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은 석재마감이며, 부대복리시설은 일부 석재 및 강판이 적용되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li> <li>•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등에 따라 B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음.</li> <li>•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및 철도, 단지 내 비상차로, 운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동출입구,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li> <li>• 해당 단지는 확장 시 거실과 침실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임으로 확장세대 거실과 침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li> <li>•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사짐, 택배, 구급 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li> <li>• 우편물 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 및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규모, 형태, 개폐형식(일면, 양면)은 상이할 수 있음.</li> <li>•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이 조성되어 102동, 103동 저층세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어린이통학차량 대기를 위해 단지 출입구 인근 설치되는 시설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냉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 될 수 있음.</li> <li>•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 수 있음.</li> <li>• 동 하부 지하1,2층 각 층 헬룸(지하주차장, 제연 등)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각 층 헬룸 급기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실시공 시 헬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li> <li>• 각 동 1층에는 DA(제연 DA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 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li> <li>•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 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li> <li>•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식재 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및 화계,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사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 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녹화를 위한 식재가 될 예정이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거주자 이용이 불가한 공간이며,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준공 후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 녹화구간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li> <li>•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상품개선을 위해 단지 내 옥외공간에 수경시설이 추가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경시설은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li> <li>•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정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 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4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북측, 102동 북동측, 103동과 104동 동측에 계획되어 있음.</li> <li>• 외부 조정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각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 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하.</li> <li>•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옥상에는 인허가 조건으로 인명구조 공간 및 옥상 소화수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9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해당 단지는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인동거리 등을 해당 지역지구 및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해당 단지의 주동 외관색채, 외벽줄눈 및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주 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등 단지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음. 단, 인허가 과정상 협의의견 및 본 공사 시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li> <li>•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Ⅶ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2(g)로 설계되어 있음.</li> <li>•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li> <li>•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 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1동 옥상층, 102동 옥상층, 103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옥상층, 102동 옥상층, 103동 옥상층 / 지하층 헬룸 2개소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li> </ul>
단지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차량출입구 2개소가 설치되며 101동, 103동, 104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 필로티 계획으로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음.</li> <li>• 필로티의 내외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li> </ul>
동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의 주 동 출입구는 1개층 필로티에 설치되며, 주 동 출입구의 내외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음.</li> <li>• 각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 및 휴게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장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li> </ul>
아파트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서측 30M도로변을 따라 단지 남서측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1~2개층높이)되어 있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102동,103동,104동 주동 하부 지하층에 물탱크실, 기계실, 음식물쓰레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코어 및 필로티 벽면, 주동 측벽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옥외)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북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고 외부 조정공간의 배치 개선 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101동 남측에 탐라이트, 동측에 탐라이트 및 경비실, 북측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필로티에 비상차량용 통과 동선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남측에 폭 17m도로(단지외 도로), 동측에 폭 9m도로(단지외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li> </ul>

		<p>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동 남동측에 단지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북측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 이후에도 공공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등의 행위가 금지됨.</li> <li>• 102동 주동하부 지상1층 1개층으로 설치된 다함께 돌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에 의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코어 및 필로티 벽면, 주동 벽면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서측에 어린이놀이터(옥외)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북동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고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 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102동 북측에 키즈스테이션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동측에 탐라이트, 북측에 DA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동측에 폭 9m도로(단지외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2동 남측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 이후에도 공공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등의 행위가 금지됨.</li> <li>• 103동 주동하부 지상1층 1개층으로 설치된 작은도서관, 독서실, 카페테리아, 관리사무소에 의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코어 및 필로티 벽면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남측에 탐라이트, 동측에 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서측에 어린이놀이터(옥외)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동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고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103동 동측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작업장소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3동 북측에 단지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북측에 동해선 지상철도(높이 약12m)이 위치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북측에 최고높이 약 1m의 단차가 발생하여, 옥외난간이 계획되며 실시공시 난간의 형태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104동 서측에 폭 30m도로(단지외 도로), 북측에 폭 7.5m도로(단지외 도로)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동측에 단지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지하1층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 및 사우나)에 의해,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코어 및 필로티 벽면에 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옥외)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4동 동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고,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 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104동 남측에 탐라이트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전동 옥상에 소화수조가 설치되어, 최상층 및 인접세대의 소음, 지동 등 환경적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미사인물은 101동 측벽과 전면부에 각각 1개소 및 층단차 부위 1개소, 104동 양 측벽에 각각 1개소 적용될 예정이며 BI 위치 및 디자인은 분양홍보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 시공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음.</li> <li>• 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최상층 1개소, 최하층 1개소 및 중간층 5개층 마다 1개소씩(동/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함)만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됨. 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li> <li>• 주동 기준층 엘리베이터 공용홀에는 개폐 가능한 창호1개소가 설치되며 코어별 창호사이즈 및 채광 정도는 상이함.</li> <li>• 동 하부 지하1,2층 제연휨륜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휨륜 급기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실시공 시 휨륜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li> <li>• 각 동1층에는 DA(제연DA포함), 지하주차장채광창, 주차장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음.</li> <li>•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될 예정임.</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단실 창호는 개폐가 가능한 창으로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공용홀의 개폐 가능한 창호(1층, 최상층 및 5개층마다 1개소)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li> <li>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음. 단, 하나의 엘리베이터홀 내에 두 개의 창호가 설치될 경우 그중 1개의 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되고 나머지 창호만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됨.</li> </ul>
<b>주동 엘리베이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코어별 3대의 승강기(피난용 승강기1대 포함)가 설치될 예정입니다.</li> </ul>
<b>외부 코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4동 1층에 설치되는 외부코어(엘리베이터, 계단실)는 단지 지반층(FH +4.90)에서 지하 1층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람.</li> </ul>
<b>무인택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동별 지하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코어별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함.</li> </ul>
<b>지하 주차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까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주차차단기 설치위치는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li> <li>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상이며, 지하1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 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li> <li>해당 현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가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관리 필요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지하주차장 지하 1,2층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102동 지하1층 인근에 근린생활주차 및 근린생활시설 폐기물 보관창고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li> <li>101동,102동,103동,104동 동측에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2개소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음.</li> <li>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li> <li>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li> <li>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li> <li>발전기실/전기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li> <li>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li> </ul>
<b>부대복리 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음.</li> <li>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관리사무소가 103동 하부 지상 1층에 설치되고,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커뮤니티센터 스포츠시설(L-라운지,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탈의/샤워실 등)이 104동 하부 지하1층에 설치되며,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을 통해 지상1층 외부와 수직 연결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커뮤니티센터 에듀시설(작은도서관, 독서실)이 103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맘&amp;키즈카페가 103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경로당이 102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어린이집이 102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p>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함께돌봄센터가 102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부출입구 인근 차량 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102동과 103동 사이 지상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실내용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 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공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함.</li> <li>•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li> <li>•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li> <li>•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li> <li>•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 내 공용부를 입주인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li> <li>•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 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li> </ul>
	<b>공급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동,103동,104동 지하층에 저수조,기계실,전기실,빛물저수조,지열기계실,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102동,103동,104동 옥상에는 소화수조 및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ul>
	<b>문주 및 경비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주출입구 인접하여 주문주가 설치될 예정임.</li> <li>• 문주 계획으로 인하여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li> <li>•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경비실이 각 1개소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가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차량 대기가 발생 할 수 있음.</li> </ul>
<b>단위세대</b>	<b>공동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미려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li> <li>•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장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84A타입 침실1에 집광채광루버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향후, 집광채광루버 시스템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li> <li>•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li> <li>•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li> <li>•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 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li> <li>• 입주 시 세대내 추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 시 마감재별 두께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li> <li>•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li> <li>•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 필로티 상부 세대 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는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음.</li> <li>•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ul>

<p><b>하향식 피난사다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단위세대는 피난용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필로티 상부 세대에는 소방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됨. 본 공사 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li> <li>•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음.</li> </ul>
<p><b>제공품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주방가구,마감자재,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li> <li>•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함.</li> <li>•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위치에 대형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li> <li>• 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li> </ul>
<p><b>가구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주방 냉장고장의 경우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가구가 미적용 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li> <li>•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 시 동등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 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li> <li>•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럭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li> <li>•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li> <li>• 인허가 과점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택형별 팬트리의 유무, 크기 및 제공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li> <li>•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li> </ul>
<p><b>창호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조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집광채광루버는 84A타입에 시공됩니다. 집광채광루버를 설치하는 호실의 경우 작동을 위한 리모콘이 제공되며, 수동·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li> <li>•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침실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일체형 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유리난간대의 높이는 FL기준 H:1,200으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비확장 세대 내부창호는 이중창, 안방 외부창호는 단창, 분합창은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외부 철재난간이 설치될 예정임.</li> <li>•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li> </ul>
<p><b>전기/설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공 시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li> <li>• 욕실 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li> <li>•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li> <li>•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으며,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li> <li>•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하부에서 주방 싱크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싱크수전 급수배관에서 분기 후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li> <li>•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li> <li>•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저층부 5개층(필로티 포함)과 최상부 2개층에 방범용 배관커버가 설치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li> <li>•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li> <li>•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양변기청소용, 욕조, 레인샤워 등)의 높이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기전시설을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및 우물천장의 사이즈 및 높이가 조절될 수 있음.</li> <li>• 현재 설치된 윌패드는 예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동등사양의 롯데OEM 제품으로 변경 설치됩니다.</li> <li>•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li> <li>•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li> <li>•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li> <li>•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유상옵션 선택시 다른 색온도의 조명기구가 설치 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폿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장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li> </ul>
	<p><b>발코니 및 실외기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용도실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등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해당 현장은 다용도실 내 실외기 및 보일러 통합계획으로, 추후 실외기그릴에 의한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 및 타일의 나누기도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안방 전면 비확장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건조대의 스위치,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li> </ul>
	<p><b>유상옵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들로 구성되어 건립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의 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li> <li>•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li> <li>•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확보 및 세대의 형태에 따라 우물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품목은 설치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불가하며, 상세사항은 추후 상품구성안을 참조하시기 바람.</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함.</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제공방식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li> <li>• 추가 선택품목 현관중문 옵션 설치 유무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 현관 슬라이딩 중문은 본 공사 시 도어의 프레임 형태 및 색상, 유리의 사양,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리로는 자재특성상 조명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선택품목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은 거실, 복도, 주방구간에 해당하는 벽마감 옵션 상품이며, 부위별로 선택할 수 없음.</li> <li>• 추가 선택품목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옵션(a.유럽산세라믹타일+b.거실,복도,쇼파뒹벽 시트판넬마감/픽처레일) 미선택시 거실 아트월 제외부위는 벽지마감임. 또한, 시트판넬의 나누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픽처레일의 위치도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중 a.유럽산세라믹타일은 자재양중, 시공의 용이성, 하자보수의 편의성으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커팅 시공됨.</li> <li>• 추가 선택품목 거실 스타일업 벽마감형 중 a.유럽산 세라믹타일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아트월 타일(아시아산)이 설치됨. 또한,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 거실 스타일업 바닥 마감형(거실, 복도, 주방) 유럽산 바닥타일 옵션 미선택시 전실 광폭 강마루 마감임.</li> <li>• 추가 선택품목 거실 스타일업 바닥 마감형(거실, 복도, 주방)선택 시 현관 디딤판 및 침실 강마루 마감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합부 디테일 및 나누기도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의 특성상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 조명 스타일업 구성으로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형별 우물천장의 크기 및 모양,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등기구로 설치됨.</li> <li>• 추가 선택품목 주방 스타일업 구성으로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은 국산타일(300X600),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MMA)으로 설치됨.(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추가 선택품목 주방 스타일업의 자체특성상(인조대리석)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합 조인트가 달라질 수 있음.</li> <li>• 추가 선택품목 욕실 스타일업 구성으로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국산 벽타일(300X600), 투피스 양변기, 반다리 세면기가 설치됨.</li> <li>• 거실팬트리는 수납공간으로만 제공되며, 내부시스템 선반은 추가 선택품목임.</li> <li>• 견본주택에 구성되어있는 침실1, 침실2 불박이장 및 안방 화장대, 드레스룸 불박이장, 드레스룸 내부 시스템 선반은 추가 선택품목이며 주택형별로 품목의 선택여부가 상이함.</li> <li>• 69타입의 추가 선택품목 침실2 불박이장(수납형)과 오픈스튜디오는 중복 선택할 수 없음.(오픈스튜디오 선택시 실 스위치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가 변경 될 수 있음)</li> <li>•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품목으로 실시공 시 제공되지 않음.</li> <li>• 하이브리드룩탑 옵션 미선택시 3구 가스룩탑이 설치되며, 기본제공 품목은 제공되지 않음.</li> <li>•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시 해당위치에 기본 하부수납장이 제공됨.</li> <li>• 기본제공 품목인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는 상판 매립형으로 해당 하부장의 수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음.</li> <li>• 냉장고장 옵션(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3도어 김치냉장고, 수납특화장)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됨.</li> <li>• 냉장고장 옵션(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3도어 김치냉장고, 수납특화장) 선택 시 수납 효율을 높여주는 수납형 커튼장이 함께 제공됨.</li> <li>• 안방 드레스룸 불박이장이나 드레스룸 내 의류관리가 옵션 미선택시 기본 시스템 수납공간으로 제공됨.</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li> </ul>
<p>기타</p>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li> <li>•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li> <li>•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li> <li>•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음.</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li> <li>•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li> <li>• 본 아파트 견본주택의 관리 및 책임은 사업주체에 있으며 견본주택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li> </ul>
<p>기타</p>	<p>제작물, 인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li> <li>•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li> <li>•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li> <li>•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li> <li>• 각 중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각 중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중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중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li> </ul>
	<b>분양상담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공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무관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리미엄 보장, 추가 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행위</li> <li>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li> <li>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행위</li> <li>4.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li> </ol> </li> </ul>

※ 주의사항

-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②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④ 발코니 축·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⑤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X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 예정일 : 2027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시행으로 일일 공사 기간 단축 시 단축 기간만큼 공기 연장이 될 수 있고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목욕시설)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지하 1층 높이 2.7m)으로 설치하였으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공동주택입니다.  
 • 내진 성능 관련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DS2019)에 따라 내진능력 (진도Ⅶ 0.202g)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4-101-0005400 호	₩ 4,690,21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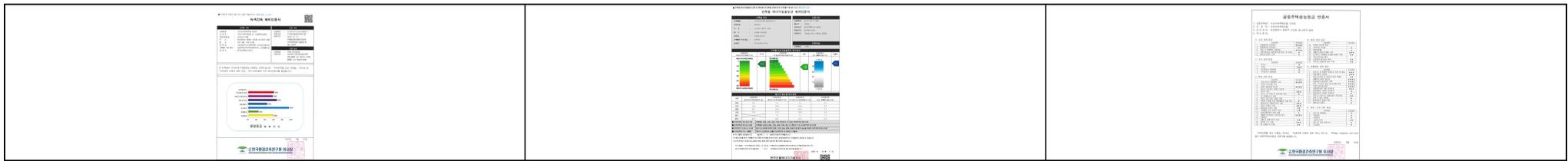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검토기준	검토항목	적합여부	비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적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4,027,143,054	
전기	(주)세종씨엠건축사사무소	869,963,000	
통신	(주)건일씨엠	286,000,000	
소방	(주)지티엘이엔지	895,126,132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회사명	수안지역주택조합	롯데건설(주)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75번길 8, 2층(수안동, 한주빌딩)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법인등록번호	733-05-02762	110111-0014764

■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 <http://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com>

■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4-9, 3층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견본주택 : ☎ 051-900-9500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